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74

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김태선·김남근·박홍배

정준호 • 이학영 • 윤종군

박 정・한민수・김태년

박해철 • 맹성규 • 윤준병

이용우 · 김주영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·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, 「행정기본법」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,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'재심사', '재검사', '재심'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, 합리적인 사유 없이 「행정기본법」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 · 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, 처리기간 · 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

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.

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「행정기본법」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42조의3, 제42조의4 및 제42조의10).

법률 제 호
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의3제5항 중 "인증심사를"을 "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"를 "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"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(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)에 따른다.

제42조의4제4항 중 "심사를"을 "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사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"를 "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"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(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)에 따른다. 제42조의10제5항 후단 중 "유통업자는 시료의"를 "유통업자는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료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중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"를 "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"로 하며,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검사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(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)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재심사 또는 재검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의3, 제42조의4 및 제42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 또는 재검사 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42조의3(무항생제축산물의 인 제42조의3(무항생제축산물의 인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 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 ------ 결과 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신청할 수 있다. 이내에 인증심사를-----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-----신청을 받 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 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 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 여부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 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---다. (7)·⑧ (생 략) (7) · (8)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⑨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 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(제2 항 단서는 제외한다)에 따른다. ⑨ (생략) ⑩ (현행 제9항과 같음) 제42조의4(인증의 유효기간 등) 제42조의4(인증의 유효기간 등) ① ~ ③ (생 략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-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<u>심사를</u>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<u>농림축산</u>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.

⑥ (생 략) <신 설>

⑦ (생 략)

- 제42조의10(인증품 및 인증사업 자의 사후관리) ① ~ ④ (생략)
 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를 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 또

4
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
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
⑤
신청을 받
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
여부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
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<u>.</u>
⑥ (현행과 같음)
⑦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
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
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(제2
항 단서는 제외한다)에 따른다.
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42조의10(인증품 및 인증사업
자의 사후관리) ① ~ ④ (현행
과 같음)
5

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 이경우 조사 결과 중 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는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<u>농림축산식품</u>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 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 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 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⑦ ~ ① (생 략) <신 설>

① (생략)

<u>유통업자는 그</u>
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
일 이내에 시료의
6
<u>신청을 받은 날</u>
부터 7일 이내에 재검사 여부
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⑦ ~ ⑪ (현행과 같음)
①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
사항 외에 재검사에 관한 사항
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(제2
항 단서는 제외한다)에 따른다.
① (현행 제12항과 같음)